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상목

건명: 양금희
[2024타경 122633]

평가서번호: 증양 032024-0927-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중앙감정평가법인

Joong-ang Appraisal Co., Ltd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태왕메트로시티701동
7층 (효목동)
대구경북지사: T) 053-751-3600 F) 751-5232
e-mail: jungang3@kapaland.co.kr
home-page: <http://www.jaa.co.kr>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규식

鄧

圭植 (인)

鄧

(주)중앙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권순철

權

감정평가액

일억육백만원정 (₩106,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상목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양금희
(2024타경122633)

감정평가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0.04

2024.10.03
~2024.10.04

2024.10.0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원)

구분건물

1개

구분건물

1개

-

106,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06,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조종학

조종학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경북여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제7층 제726호로서, 대구지방법원의 법원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년 10월 04일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4년 10월 03일 ~ 2024년 10월 04일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방식

-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구분건물

1)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등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적용 감정평가 방법

- (1)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 (2) 시산가액 조정 : 본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다.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해당 없음.

7. 그 밖의 사항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폐문부재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평면도 및 주민탐문조사에 의거 통상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 하였던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감정평가 대상 개요

가. 전체 단지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건물명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수(지하/지상)	-4/21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단지규모	1개동 471세대/호
사용승인일	2019.05.24	대지면적(㎡)	1,604
연면적(㎡)	22,884.7672	비고	-

나. 대상 구분건물 개요

기호	층/호수	용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면적 (㎡)
가	7/726	오피스텔	21.7589	22.372	44.1309	2.95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산출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사례자료

■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
①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0/0/000	22.113	22.11	110,000,000	4,974,000	2024.06.21
							2019.05.24
②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0/00/0000	21.7589	2.95	110,500,000	5,078,000	2022.12.30
							2019.05.24
③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0/00/0000	22.113	3	100,000,000	4,522,000	2024.05.30
							2019.05.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원)	전유단가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
①	경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0/0/000	21.7589	113,000,000	5,193,000	2024.09.26
						2019.05.24
②	공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0/0/000	22.113	110,000,000	4,974,000	2024.06.28
						2019.05.24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비교적 최근에 거래되고 본건과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①>을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 비교거래사례 ① 기준

본건 구분건물의 가격 변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나 변동률이 조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 중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의 변동률을 산정하여 본건의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지역 및 건물유형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대구 오피스텔 (2024-06-21 ~ 2024-10-04)	-1.361% (0.98639)	$1 + ((97.14 - 98.48) / 98.48)$ ≈ 0.98639

※ 미발표된 분기의 자본수익률은 발표된 자본수익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분기의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 가) / 거래사례 ①

요인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시공업체의 브랜드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내부 평면방식(베이)	1.00	대체로 유사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기 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산정가액(원)	적용가액(원)
가	4,974,000	1.00	0.98639	1.000	4,906,304	21.7589	106,755,778	106,000,000
합계		-	-	-	-	-	106,755,778	10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기호	층/호수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
가	제7층 제726호	21.7589	106,000,000	4,872,000
합 계			106,000,000	-

2. 결정의견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다른 감정평가 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
①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6/620	22.113	22.11	110,000,000	4,974,000	2024.06.21
							2019.05.24
②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15/1512	21.7589	2.95	110,500,000	5,078,000	2022.12.30
							2019.05.24
③	매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20/2007	22.113	3	100,000,000	4,522,000	2024.05.30
							2019.05.24

■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원)	전유단가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
①	경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6/601	21.7589	113,000,000	5,193,000	2024.09.26
						2019.05.24
②	공매	남산동 694-3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4/404	22.113	110,000,000	4,974,000	2024.06.28
						2019.05.24

구분건물 평가명세표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외
건물명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기호	구분	지목 및 용도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694-2,694-5, 694-6,694-8,694-16, 694-17,694-20,694-27 ,695-2,695-7,697-20, 697-21,697-35 반월당아너스 제네스타워오피스텔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지4층 지3층 지2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 평가명세표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외
건물명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기 호	구 분	지 목 용 도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전유부분의 7층72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표시)	21.7589	21.7589	106,000,000	
	(대지권의 목적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2. 동 소 694-2 3. 동 소 694-5 4. 동 소 694-6 5. 동 소 694-8 6. 동 소 694-16 7. 동 소 694-17 8. 동 소	토지의 표시) 대 대 대 대 대 대 대	300 86 112 150 13 108 301 254			

구분건물 평가명세표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외
건물명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기 호	구 분	지 목 용 도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694-20 9. 동 소	대	58			
	694-27 10. 동 소	대	64			
	695-2 11. 동 소	대	112			
	695-7 12. 동 소	대	9			
	697-20 13. 동 소	대	27			
	697-21 14. 동 소	대	10			
	697-35					
	· 대지권의 종류: 1,2,3,4,5,6,7,8,9, 10,11,12,13,14 소유권					
	· 대지권의 비율: 1,2,3,4,5,6,7,8,9, 10,11,12,13,14		2.9540			
			1,604		2.9	
			<토지, 건물	배분내역>		
			토지 :	29,680,000		
			건물 :	76,320,000		
	합 계				₩106,000,000	
					-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경북여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21층 건물 중 726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화강석 등 마감.
내벽: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강화마루,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 1) 냉난방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 2) 기타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1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임.

구분건물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단지 주변으로 도로개설되어 있어 출입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고하시기 바람.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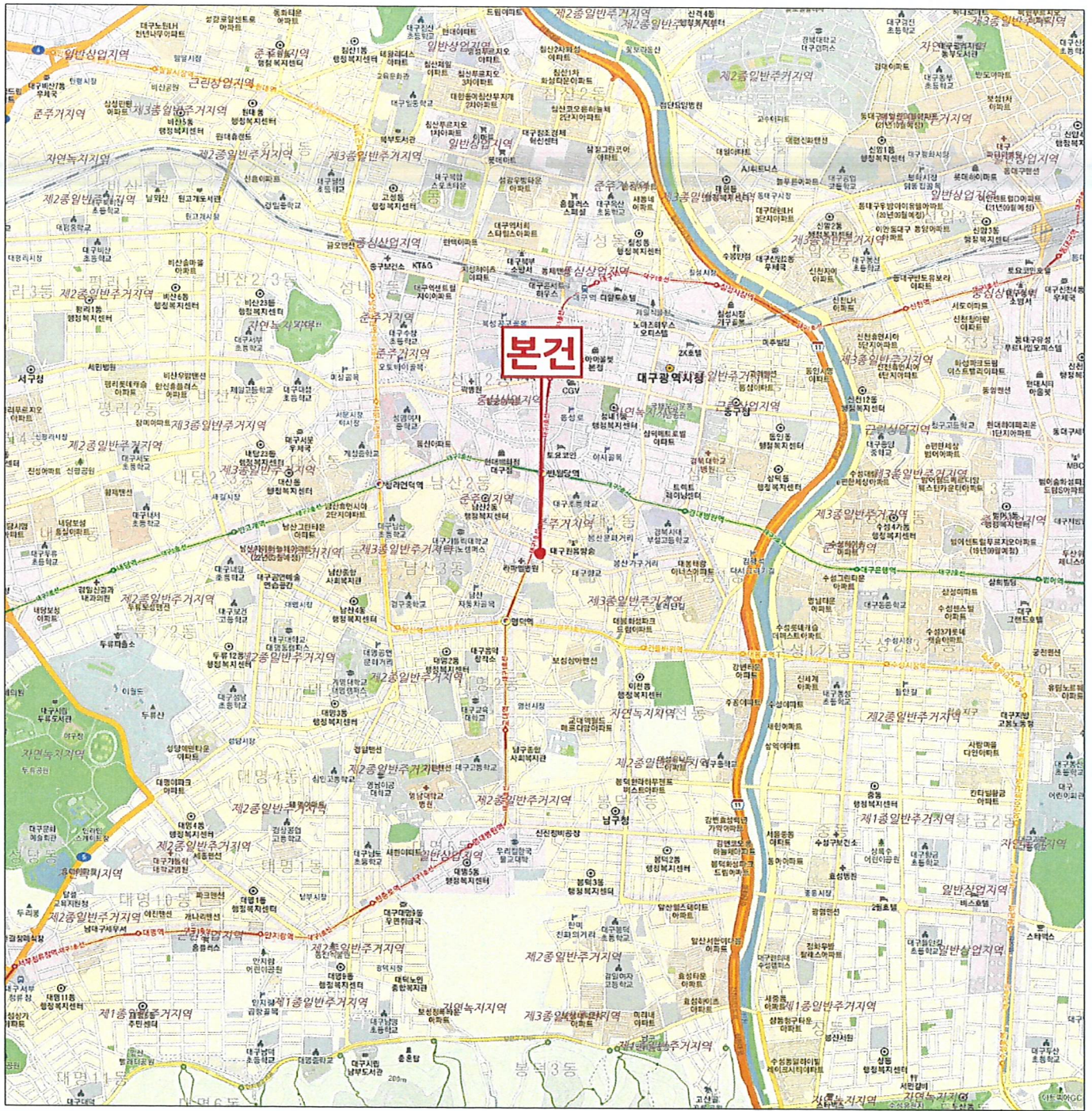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없 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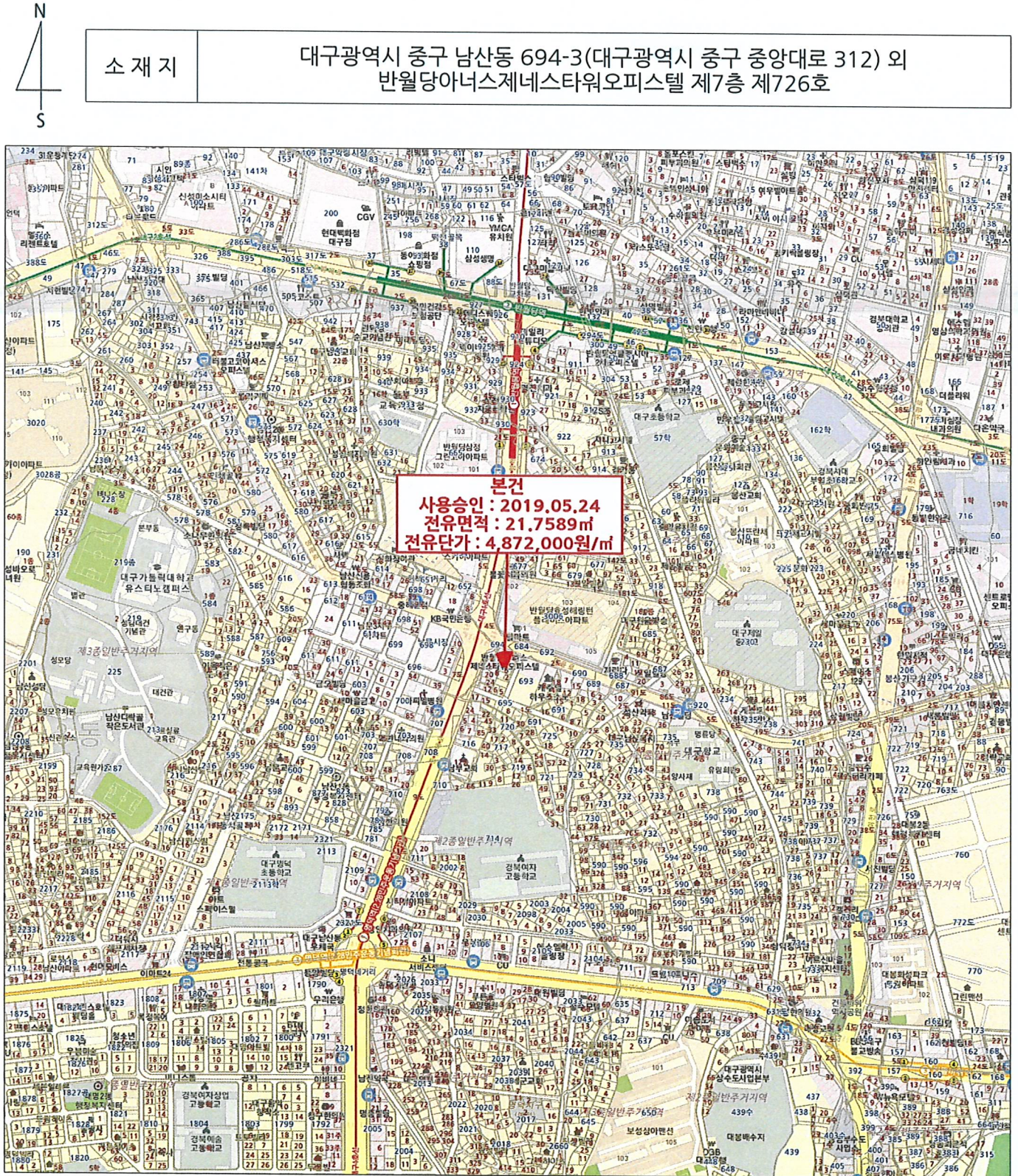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외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상세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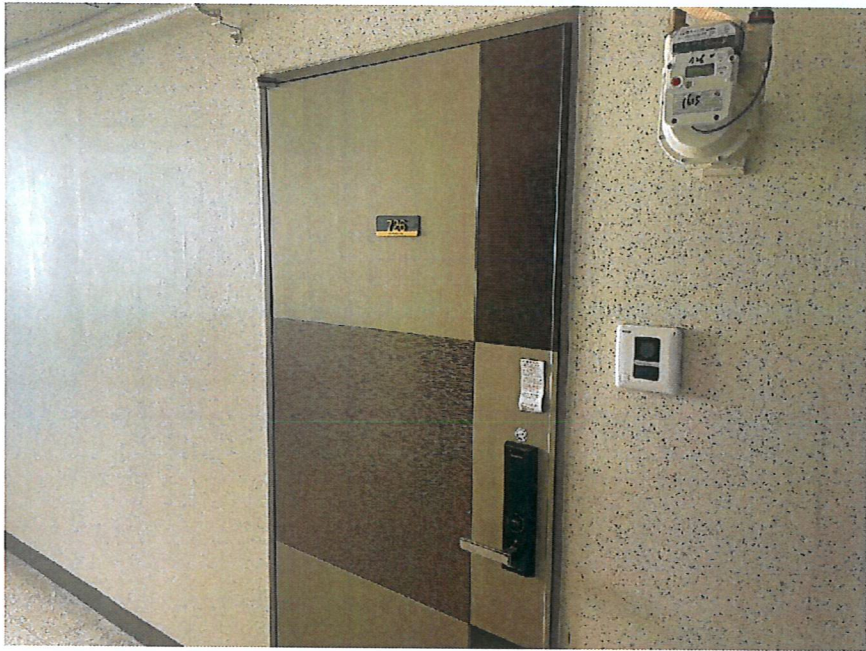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외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사진용지



[본건 전경]



[본 건]

(주)중앙감정평가법인

(TEL: 053-751-3600, FAX: 053-751-5232)

문서번호 : 중앙 032024-0927-002

수 신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상목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09.24 자 귀 제

2024타경122633

호로

의뢰하신

양금희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보수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가수수료	290,000	$(106,000,000 \times (11/10,000) + 145,000) \times 0.8$ $\approx 290,000$
실	106,000	
여비교통비	—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17,000	
기타실비	5,000	
비	—	
특별용역비	—	
소 계	138,000	
공급가액	428,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42,800	
합 계	470,8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470,800	

붙임 : 감정평가서 2부

나. 송금처 『사업자등록번호 : 502-85-19069』

국민은행 215401-04-060973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인 "0927002" 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사장



(주) 중앙 감정평가법인

수 신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상목
참 조
제 목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항상 우리 감정평가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09.24일자귀 제 『 2024타경122633 』로 의뢰하신 『 양 금 희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감정평가서 2부
2) 청구서 1부 끝.

대 구 경 북 지 사 장

담당부서 : 담당평가사 : 정 규 식
시행 중앙 032024-0927-002 (2024.10.08)
우41231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태왕메트로시티701동 7층 (효목동)
TEL. 053-751-3600 FAX. 053-751-5232 / <http://www.jaa.c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대	30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가계>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준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900 수입증지 붙이는곳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214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212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4/ 10/ 0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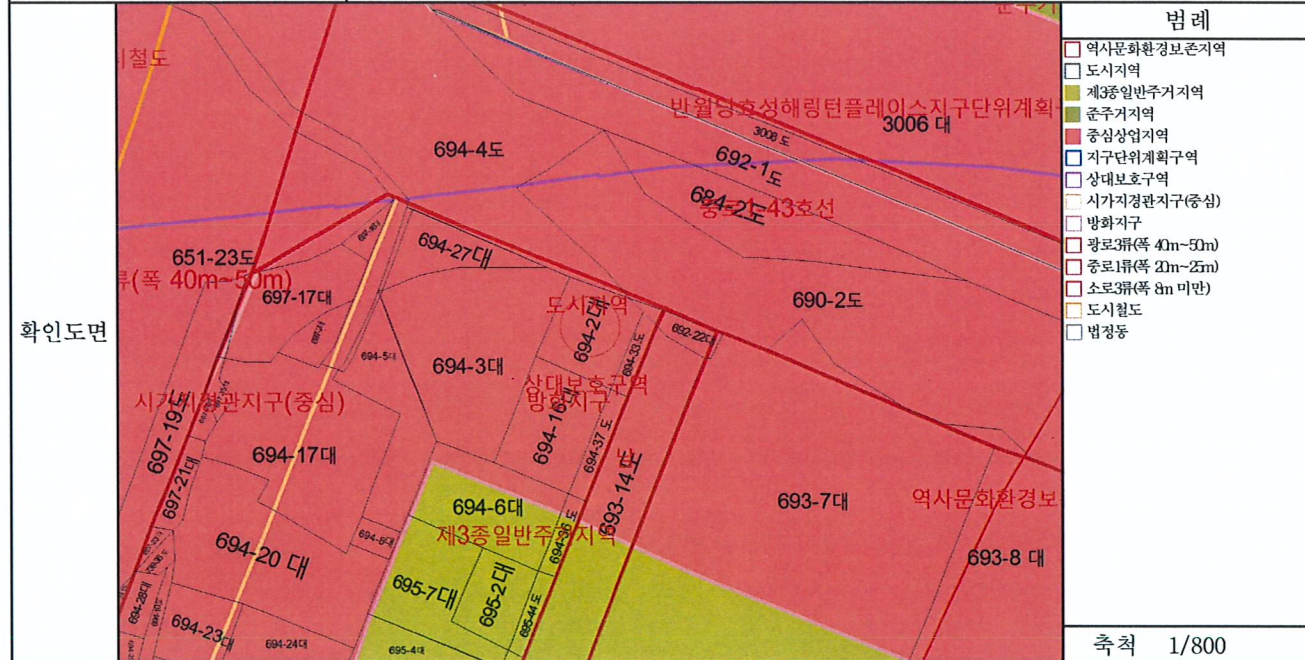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	대	86.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10/ 0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수취료 전자결제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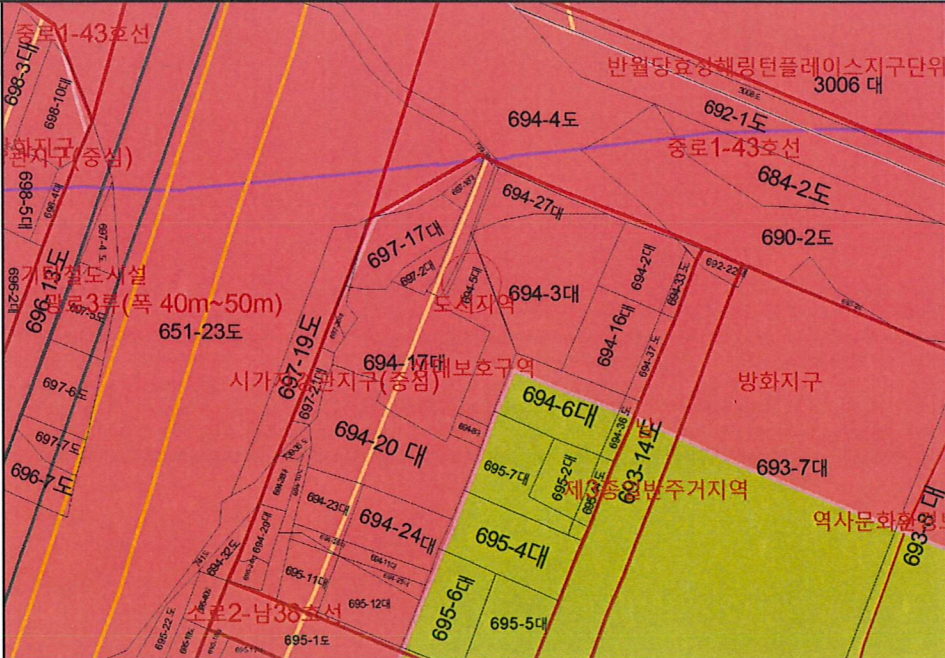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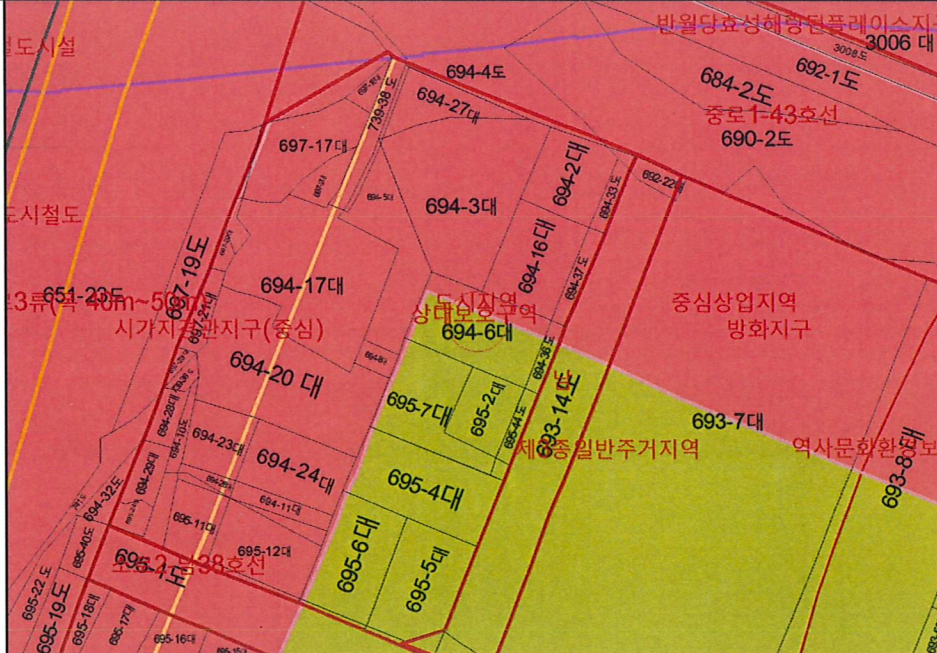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5	대	112.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10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div>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6	대	15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축척 1/9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div>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92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89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4/ 10/ 0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8	13.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복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가계>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p>축척 1/800</p> <p>수입증지 불이은곳</p>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89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16	대
				면적(m ²)
				10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9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수 수 료 전 자 결 제 민 원 </div>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86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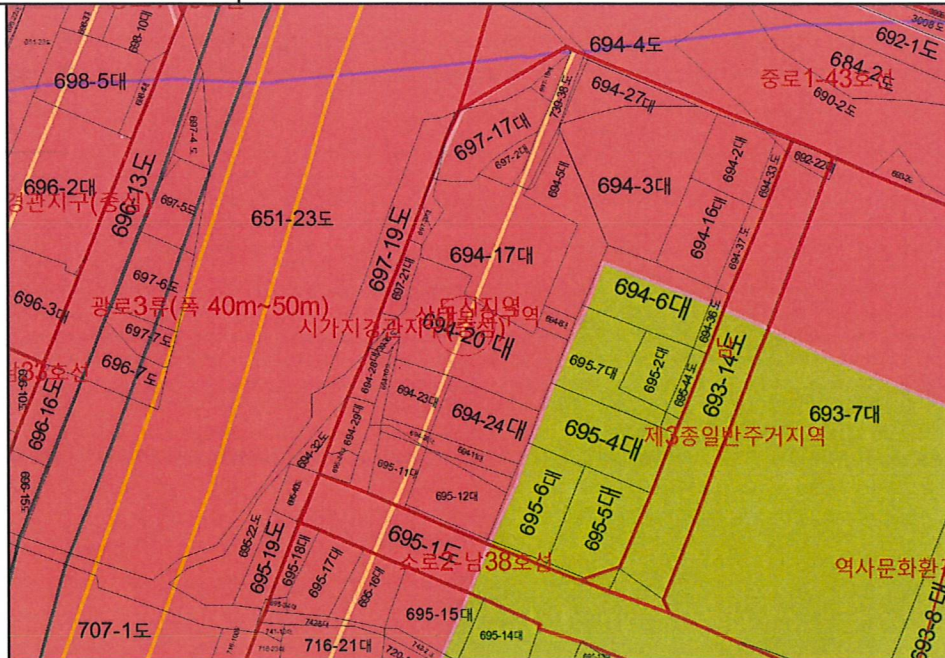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17	대	301.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10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div>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84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0	대
				면적(㎡)	254.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p>확인도면</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1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축척 1/10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2024/ 10/ 04</p> <p>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p>수수료</p> <p>전자결제</p> <p>민원</p>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80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7	대	5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준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정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p>축척 1/9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div>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204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 번	지 목	면적(m ²)
			695-2	대	64.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p>축척 1/8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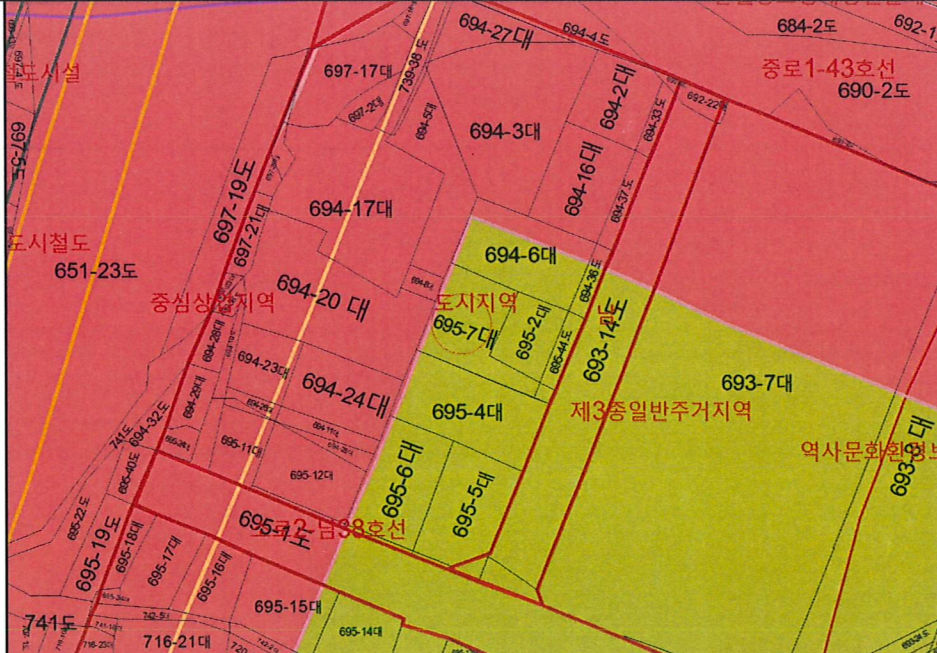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216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 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5-7	대
				면적(m ²)
				112.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p>축척 1/9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div>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 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78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4/ 10/ 0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7-20	대	9.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도시관리과문의(661-2815))(접합)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8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입증지 붙이는곳
2024/ 10/ 04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 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지목	면적(m ²)
			697-21	대	27.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도시관리과문의(661-2815))(접합)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종일반주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상대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시가지경관지구(중심) <input type="checkbox"/> 방화지구 <input type="checkbox"/> 광로3류(폭 40m~50m) <input type="checkbox"/> 중로1류(폭 20m~25m)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input type="checkbox"/> 기타철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축척 1/8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div>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0/ 04</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중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발급번호 : 202427110001519195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4/ 10/ 04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 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종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3쪽 중 제1쪽)

건물ID	2120191450000064	고유번호	2711015600-3-06940003	명칭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 오피스텔		호수/기구수/세대수	471호/07기구/0세대	
대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대지면적	1,604 m ²	연면적	22,884.7672 m ²	*지역	중심상업지역 외 2		*지구	중심지미관리지구 외 2	
건축면적	1,179.9991 m ²	용적률 신청용 연면적	18,297.8711 m ²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73.57 %	*용적률	1,140.77 %	높이	90.6 m		지붕	(철근)콘크리트	
*조경면적	260.09 m ²	*공개 공지/공간 면적	130.9235 m ²	*건축선 후퇴면적	m ²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주1	지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926.4435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1,186.8271
주1	지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856.4685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2층근린생활시설	449.2675
주1	지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실/기계실	321.6669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관리실, MDF, 방재실 등	233.2787
주1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1,295.4901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2층근린생활시설	915.0216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4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담당자: 전 화: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x210mm [백상지 80g/m²]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2쪽)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명칭 반월당 이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호수/가구수/세대수

471호/07가구/0세대

지번 694-2, 694-5, 694-6, 694-8, 694-16, 694-17, 694-2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승용	비상용	취공일	
			구분	육내	육외	인근					면적
건축주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110111-1*****	구분	64 대	1 대	대	2 대	대	1 대	취공일	2015.10.8.
설계자	(주)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주)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건축사사무소 -607	자주식	3,102.657 m ²	대	대	※ 하수처리시설	※ 급수설비(저수조)	개	취공일	2016.9.12.
공사감리자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신정 신정건축	대구광역시-건축사사무소 -147	기계식	207 m ²	대	대	형식	구분 수량 및 총용량	m ³	취공일	2016.9.12.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주)태왕이엔씨 (주)태왕이엔씨	대구광역시-토목건축공사업 -1106	전기차	930.4019 m ²	대	대	용량	지하	m ³	사용승인일	2019.5.24.
*건축물 인종 현황											
인종명	유호기간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지하수위				종류				
			미해당				점검유호기간				
			기초형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내력기초 80 (V/m) [<input type="checkbox"/> 파일기초				정기점검				
			[<input type="checkbox"/>] 파일기초				2024.5.24.~2027.4.21.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2019.5.24. 2024.2.2.	신축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2015-신축허가-99)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2023.8.1.>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4.2.2)에 의거 건축물 관리 현황 여부 기재	2024.7.25.	정기점검(점검기간: 2024.05.24까지, 보고일: 2024.06.10) - 이하여백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역: 도시지역 지구: 최저고도지구 지구: 빙화지구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3쪽)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명칭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호수/가구수/세대수 471호/07가구/0세대

지번 694-27, 695-2, 695-7, 697-20, 697-21, 697-35 도로명주소 관령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694-3 외 13필지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승용대	비상용대	허기일
			구분	육내	육외	인근	면제	승용대				
건축주												
설계자			구분	자주식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공사감리자			기계식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건축물 인증 현황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특수구조 건축물		지하수위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지내력기초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종류	
		GL		m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19145000064	고유번호	2711015600-3-06940003	명칭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원 오피스텔	호수/가구수/세대수	471호/071구/0세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코인세탁실·주민회의실 등	146.0678	주1	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74.1355
주1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74.1355
주1	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1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74.1355
주1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2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74.1355
주1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주1	2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32.8049
주1	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 이하여백 -		
주1	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894.634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2쪽 중 제1쪽)

건물ID	2220191450000764	고유번호	2711015600-3-06940003	명칭	반월당 이너스 계네스타 워오피스텔	호명칭	726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양금회			
주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21.7589	540825-2*****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샛터말길 60	1/1	2019.10.14.	소유권이전
공용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주	지3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실,기계실	0.5924					
주	지4~지1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7.9012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2024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담당자: 전 화:

※ 경계벽이 없는 구분경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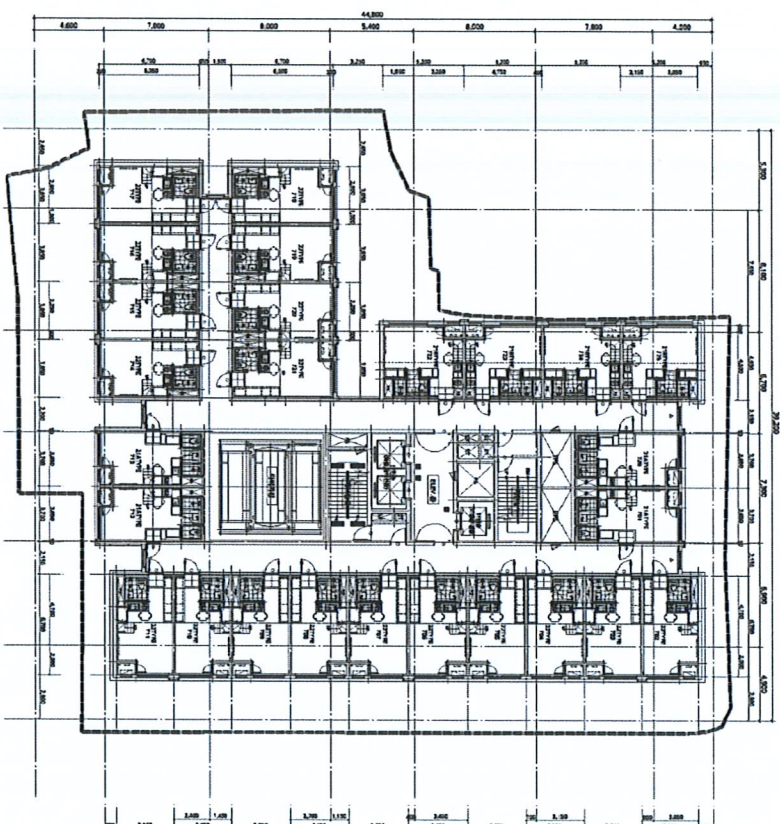
297mm×210mm[백상지 (80g/m²)]



건축물현황도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19145000064	고유번호	2711015600-3-06940003	명칭	반월당 어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호수/가구수/세대수	471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도면의 종류	평면도(1층)	축척	1 : 400	도면 작성자	(주)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남효철 (서명 또는 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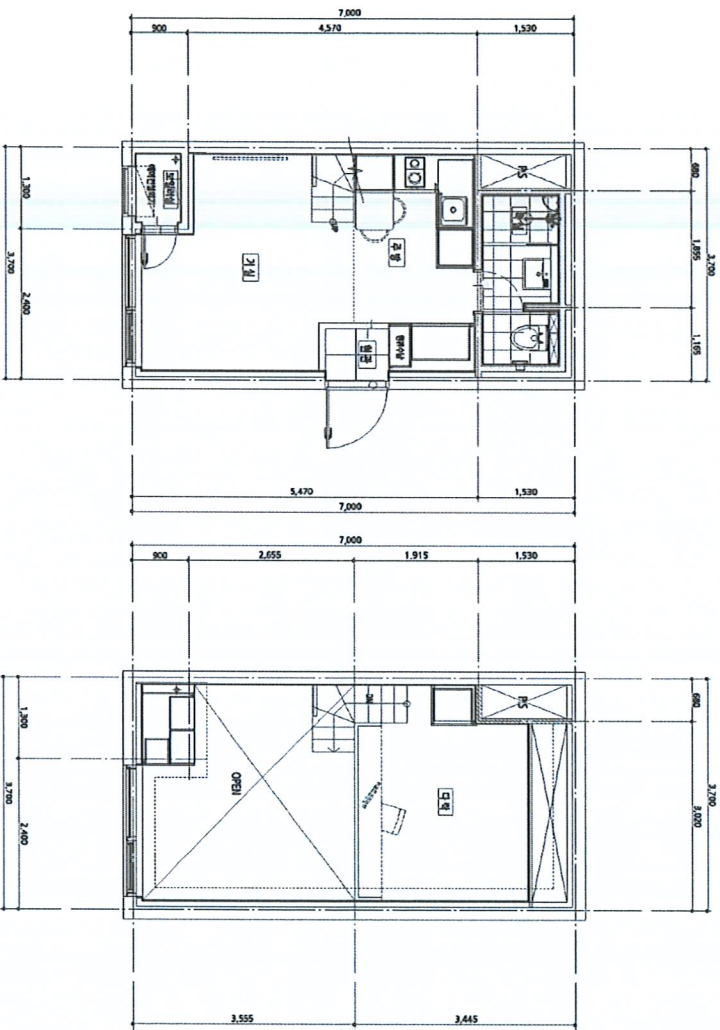


건축물현황도

(1쪽 중 제1쪽)

건물ID	22220191450000764	고유번호	2711015600-3-06940003	명칭	반월당 이너스 제네스티워 오피스텔	호명칭	726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지번	694-3 외 13필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남산동)		

건축물현황도



다락

도면의 종류	평면도	축척	1 : 100	도면 작성자	(주)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남훈철	(서명 또는 인)
--------	-----	----	---------	--------	--------------------	-----------

※ 건축물현황도는 단위세대평면도만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제출용] -

고유번호 1701-2019-006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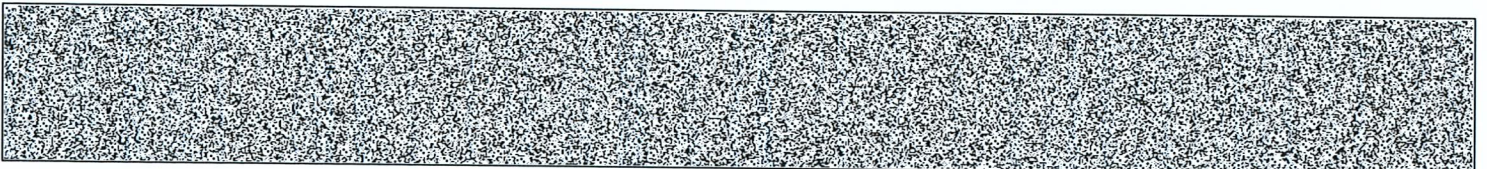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외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9년6월12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694-2, 694-5, 694-6, 694-8, 694-16, 694-17, 694-20, 694-27, 695-2, 695-7, 697-20, 697-21, 697-35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4층 926.4435㎡ 지3층 1178.1354㎡ 지2층 1295.4901㎡ 지1층 1186.8271㎡ 1층 682.5462㎡ 2층 1061.0894㎡ 3층 894.6349㎡ 4층 894.6349㎡ 5층 894.6349㎡ 6층 894.6349㎡ 7층 894.6349㎡ 8층 894.6349㎡ 9층 894.6349㎡ 10층 894.6349㎡ 11층 894.6349㎡ 12층 894.6349㎡ 13층 894.6349㎡ 14층 894.6349㎡ 15층 894.6349㎡ 16층 894.6349㎡ 17층 874.1355㎡ 18층 874.1355㎡ 19층 874.1355㎡ 20층 874.1355㎡ 21층 532.8049㎡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70202170012040910101902713JU0064305NGA13819NG1112

발급확인번호 AANJ-WYGX-4386

발행일 2024/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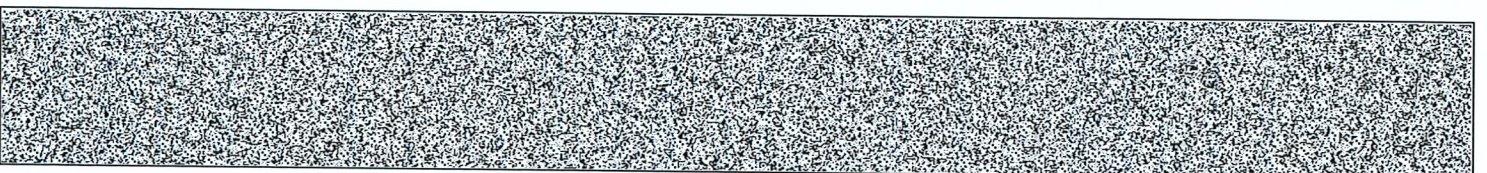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외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 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5 4.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6 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8 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16 7.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17 8.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0 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27 1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5-2 1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5-7 1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7-20 1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7-21 14.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7-35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300m ² 86m ² 112m ² 150m ² 13m ² 108m ² 301m ² 254m ² 58m ² 64m ² 112m ² 9m ² 27m ² 10m ²	2019년6월12일 등기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9년6월12일	제7층 제72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1.7589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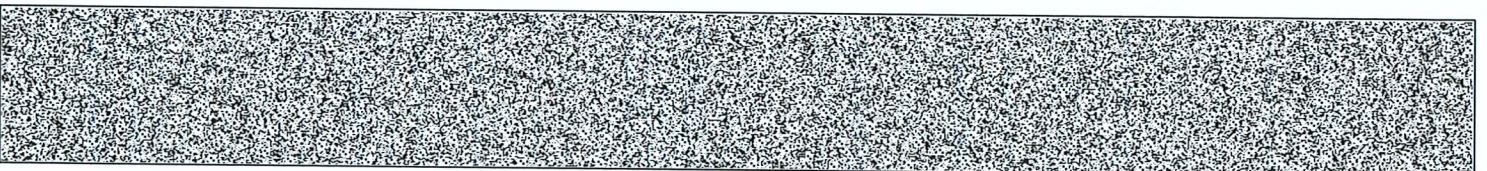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외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소유권대지권	1604분의 2.9540	2019년6월3일 대지권 2019년6월12일 등기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18번 신탁등기), 2토지(갑구7번 신탁등기), 3토지(갑구16번 신탁등기), 4토지(갑구5번 신탁등기), 5토지(갑구16번 신탁등기), 6토지(갑구5번 신탁등기), 7토지(갑구4번 신탁등기), 8토지(갑구9번 신탁등기), 9토지(갑구16번 신탁등기), 10토지(갑구12번 신탁등기), 11토지(갑구6번 신탁등기), 12토지(갑구3번 신탁등기), 13토지(갑구3번 신탁등기), 14토지(갑구7번 신탁등기) 2019년6월12일 등기
3			2번 별도등기 말소 2019년10월14일 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9년6월12일 제83695호		소유자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신탁재산처분에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2019-10069호
2	소유권이전	2019년10월14일 제149700호	2018년1월12일 매매	소유자 양금희 540825-*****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셋터말길 60 거래가액 금117,630,000원
	1번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3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년5월25일	2023년5월25일	채권자 환창희 85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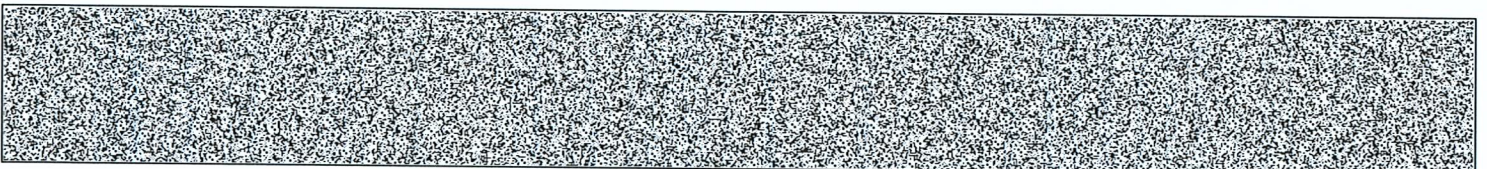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외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60633호	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3타경108777)	대구 달서구 외룡로 186, 102동 2404호 (감삼동, 빌리브스카이주상복합)
4	압류	2023년12월6일 제149865호	2023년12월6일 압류(안성지서-타78522)	권리자 국 처분청 평택세무서장
5	3번강제경매개시결정 정등기말소	2024년2월26일 제29744호	2024년2월14일 취소기각결정	
6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3일 제148182호	2024년9월23일 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4타경122633)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0003123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영남관리센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주택임차권	2023년9월22일 제117522호	2023년9월18일 대구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23카임207)	임차보증금 금120,000,000원 범 위 건물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8월6일 주민등록일자 2021년9월16일 점유개시일자 2021년9월16일 확정일자 2021년8월6일 임차권자 한병재 910228-*****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726호 (남산동, 반월당태왕아너스제네스타워)
1-1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3년9월22일 부기

-- 이 하 여 백 --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외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위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4년 9월 27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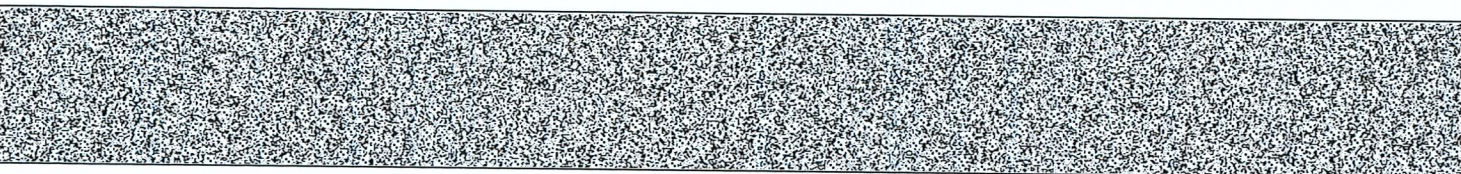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gaps,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70202170012040910101902713JU0064305NGA53819NG1112

발급확인번호 AANJ-WYGX-4386

발행일 2024/09/27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의 사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701-2019-006438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의 13필지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제7층 제726호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양금희 (소유자)	540825-*****	단독소유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샛터말길 60	2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4	압류	2023년12월6일 제149865호	권리자 국	양금희
6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3일 제148182호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양금희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	임차권설정	2023년9월22일 제117522호	임차보증금 금120,000,000원 임차권자 한병재	양금희

[참 고 사 항]

-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